한·미FTA 재논의 농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2017.9.12(화)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

주 관

농수축산신문

후 원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미FTA 재논의
농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세부일정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0:00~10:00 **참석자 등록**

10:00~10:15 **개회사** 김현권 국회의원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축사 국회의원, 단체장 등

10:15~10:55 **주제발표 (각 20분)**
한·미 FTA 이행과 농업부문 영향
-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한·미 FTA 재협상 대비 농업부문 대응방향
-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0:55~12:20 **지정 및 추가토론 (지정토론 각 8분)**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12:20~12:30 **청중질의응답**

12:30~ **정리 및 폐회**

개회사

김 현 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입니다.

지난 달 미국이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상과 무역자유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 농업이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제 과연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다보고 이에 대비하는 일이 우리 농업계의 주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국내 시장, 특히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쇠고기 시장은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 8,200만달러인데 반해, 한국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7억 1,800만달러로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합니다.

미국이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율 철폐 카드를 꺼낸다면 우리 농업은 앉아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에는 빠졌지만 미국측이 자국산 쌀 무관세 의무수입량 TRQ 추가, 그리고 쇠고기, 분유와 같은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미국과 일본간 TPP 협정문에 추가된 내용들을 한·미 FTA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는 TPP를 폐기한 대가로 미국 곡물, 축산물 수출기업들이 포기해야만 했던 일본의 무관세 및 저율관세 추가 시장 개방 몫을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메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로 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이 안보 논리와 맞물리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이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우리 농업계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미FTA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제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FTA 피해보전 대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한·미FTA 재협상 농축산업계 대응방안 토론회>를 통해 우리 농업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 나가는 지혜와 대안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미FTA 재논의
농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

한·미FTA 이행과 농업부문 영향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한미 FTA 이행과 농업부문 영향

정민국(FTA이행지원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ontents

0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동향
02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03 한미 FTA이행과 영향
04 향후 과제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0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동향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미 FTA 이행 5년차('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71.8억불(발효 전 평년 62.9억불 대비 14.1% 증가, 이행 3년차 이후 감소 추세)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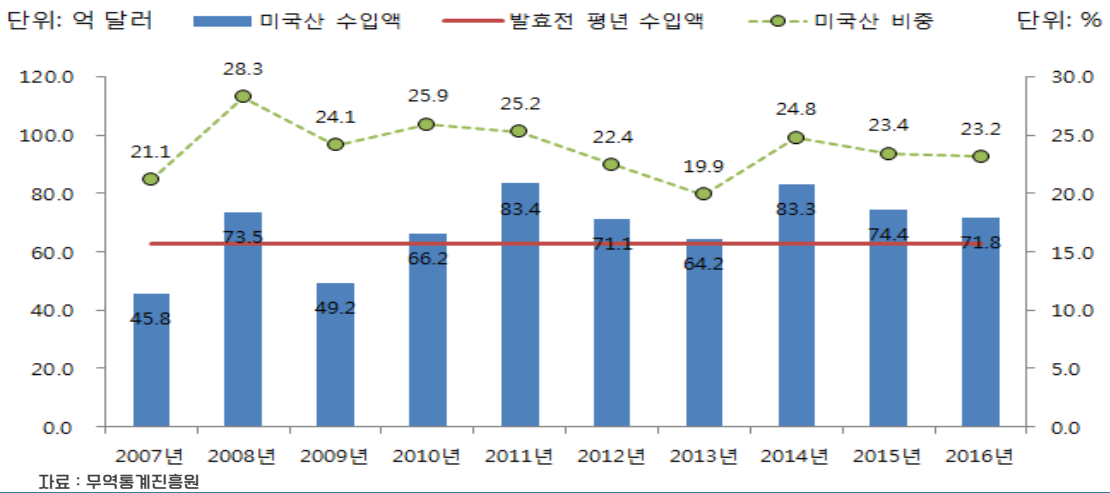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부류별 추이: 이행 5년차 미국산 과일·채소, 축산물, 가공식품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곡물과 임산물은 감소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대비 (F/A)	1년차 대비 (F/B)	2년차 대비 (F/C)	3년차 대비 (F/D)	4년차 대비 (F/E)
전체 합계	6,295	7,113	6,419	8,335	7,445	7,182	14.1	1.0	11.9	-13.8	-3.5
농산물	4,344	4,422	3,642	5,090	4,418	4,357	0.3	-1.5	19.6	-14.4	-1.4
- 곡물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32.6	-20.9	30.2	-31.9	-3.5
- 과일·채소	328	593	616	610	625	628	91.4	5.9	2.1	3.1	0.6
- 가공식품	1,036	1,453	1,584	1,721	1,847	1,850	78.5	27.3	16.8	7.5	0.2
축산물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82.9	11.0	9.5	-9.4	-1.9
임산물	795	793	852	918	878	717	-9.7	-9.5	-15.9	-21.9	-18.3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2) 발효 전 평년 수입액은 2007~2011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1 2 3 4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동향

1.2 對미 농축산물 수출 동향

□ 이행 5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7.2억불(한·미 FTA 발효 전 평년 4억불 대비 80% 증가, 발효 후 연평균 10.3% 증가)

<對미 농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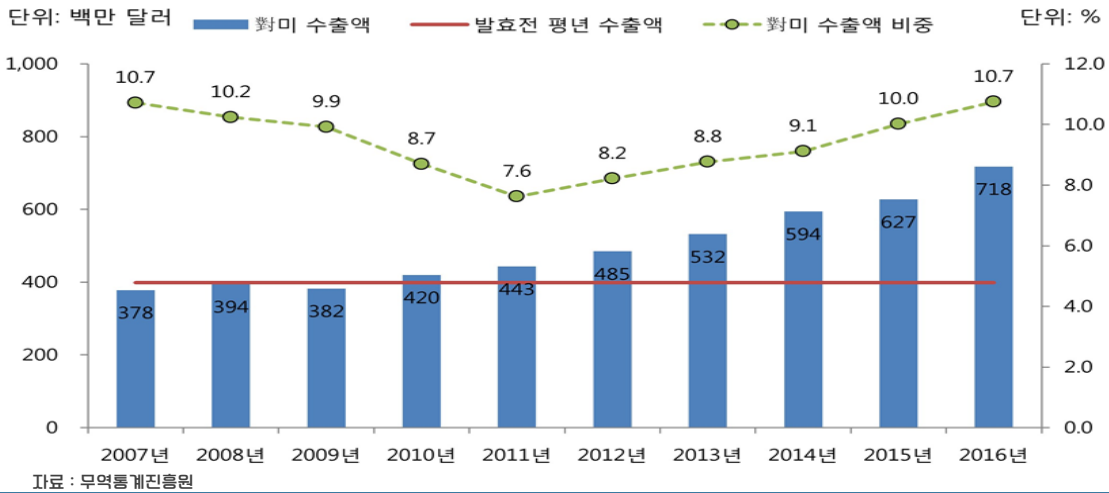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1.2 對미 농축산물 수출 동향

□ 부류별 추이: 이행 5년차 對미 가공식품, 과일·채소, 축산물, 곡물 수출액은 발효 전 대비 모두 증가했으나,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75.6%)이 매우 높은 수준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대비 (F/A)	1년차 대비 (F/B)	2년차 대비 (F/C)	3년차 대비 (F/D)	4년차 대비 (F/E)
전체 합계	399	485	532	594	627	718	80.0	48.1	35.0	20.8	14.4
농산물	360	441	473	530	558	634	76.3	43.8	34.0	19.6	13.7
- 곡물	8	9	10	9	9	10	17.2	6.8	-1.5	6.6	6.2
- 과일·채소	58	67	74	74	74	82	41.8	21.6	10.7	10.2	10.9
- 가공식품	294	365	390	447	475	543	84.9	48.8	39.3	21.5	14.2
축산물	22	27	35	36	35	35	63.7	31.3	1.2	-1.9	1.0
임산물	16	16	23	28	34	48	195.7	193.2	105.1	72.4	40.9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2) 발효 전 평년 수입액은 2007~2011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1 2 3 4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동향

1.3 농축산물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1.3%(전년 대비 소폭 하락)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2.6('13) → 63.3('14) → 71.6('15) → 71.3('16)

* 미국산 농축산물 중 쇠고기 수입액(10.4억 달러) 비중이 가장 높고(14.4%),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99.9%로 매우 높음

< 2016년 주요 농산물 한·미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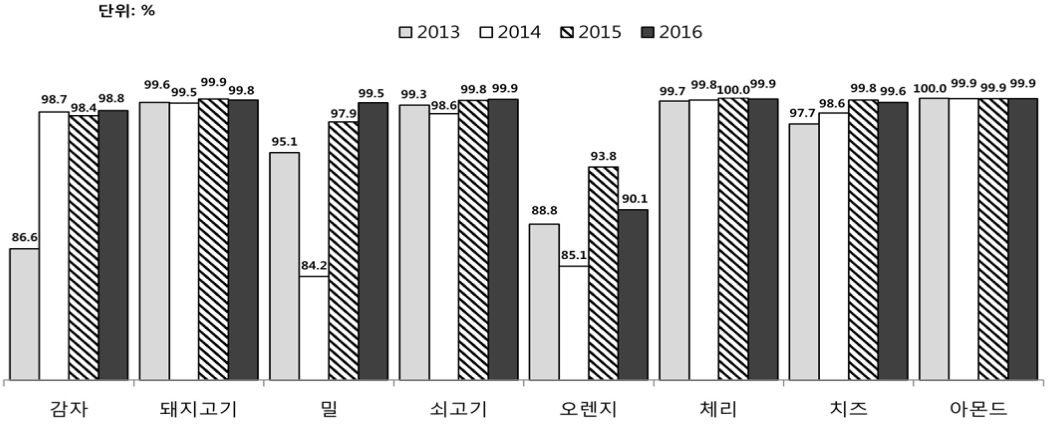

* 수입 규모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

1.3 농축산물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5년차 對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48.7%(전년 대비 0.9%p 상승)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46.7('13) → 46.2('14) → 47.8('15) → 48.7('16)

단위: %

< 2016년 주요 농산물 한·미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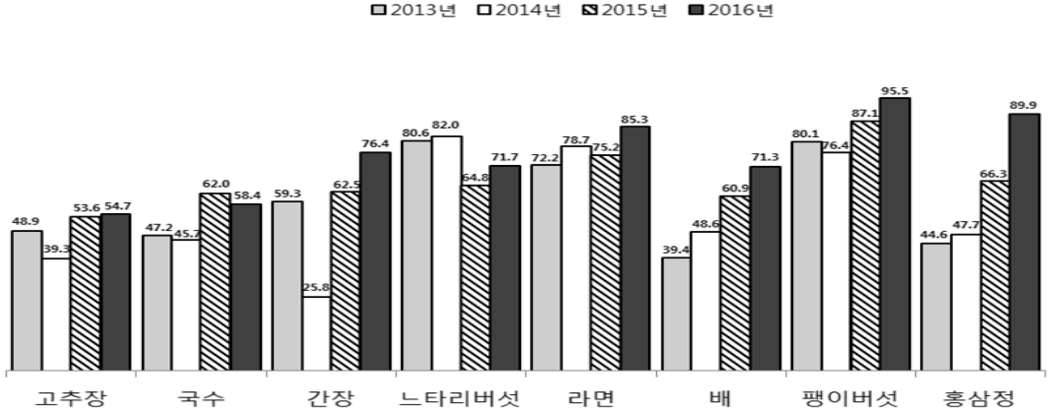

*수출규모 1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50% 이상인 품목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02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KREI

2.1 축산물

□ 이행 5년차 미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82.9%, 수입량은 18.5% 증가

–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수입은 수입선 전환 등으로 최근 감소세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5년차 ('16)(F)	발효 전 평년 대비(F/A)	4년차 대비 (F/E)
쇠고기	수입액	301	522	578	764	802	1,035	58.5*	29.1
	수입량	62	106	101	112	115	169	31.3*	46.0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393	74.9	-13.6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149	51.8	-1.1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8	-84.3	-45.7
	수입량	39	54	45	65	11	7	-82.0	-33.9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169	199.8	-32.7
	수입량	13	32	43	64	55	40	207.9	-27.1
분유 (탈지+전지)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2.6	1315.7	-1.7
	수입량	0.3	1.9	6.3	8.0	5.7	6.1	2019.0	7.3
전체 축산물	수입액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82.9	-1.9
	수입량	461	558	518	561	520	546	18.5	5.1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수입액(량)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다만 쇠고기는 2011년 기준)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 2 3 4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2.1 축산물

□ 2016년 쇠고기 협정관세율 : 미국 26.6%, 호주 32.0%

– 호주의 경우, 한· 호주 FTA 발효(2014.12.12) 이후 협정관세율 적용

수출국	세부 품목	기준관세율 (%)	FTA 협정관세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국	냉동·냉장쇠고기, 냉동갈비	40	29.3	26.6	24.0	21.3
호주	냉동·냉장쇠고기, 냉동갈비	40	34.6	32.0	29.3	26.6

□ 2016년 돼지고기 협정관세율 : 국가별, 부위별로 상이

– 캐나다의 경우, 한· 캐나다 FTA 발효(2015.1.1) 이후 협정관세율 적용

수출국	세부 품목	기준관세율 (%)	FTA 협정관세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EU (전년 7월~ 금년 6월)	냉동돼지고기	25	8.3	4.1	0	0
	냉동삼겹살	25	15.9	13.6	11.3	9.0
	냉장삼겹살	22.5	14.3	12.2	10.2	8.1
미국	냉동돼지고기	25	4.0	0		
	냉동삼겹살	25	0			
	냉장삼겹살	22.5	13.5	11.2	9.0	6.7

2.1 축산물

□ FTA 이행 5년차 미산 축산물 수입가격 관세율 하락 효과: 약 12% 추정

- 주요품목별 관세 하락 효과: 쇠고기 9.6%, 돼지고기 19.6%, 닭고기 8.3%

  * 관세철폐시 가격 하락 효과: 쇠고기 28.6%, 돼지고기 20.0%, 닭고기 16.7%

<미국산 주요 축산물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10,219	3,676	1,429
	FTA 발효(B)	9,241	2,955	1,310
관세율 하락효과(B/A)		-9.6	-19.6	-8.3
주요 축산물 평균		-12.0		

주 1) 쇠고기는 냉동·냉장 쇠고기와 냉동갈비, 돼지고기는 냉동 돼지고기와 냉장·냉동 삼겹살, 닭고기는 냉동 닭다리·닭가슴·닭날개를 대상으로 분석함.
2) 분석에 사용한 각 수입 품목은 미국산 수입 상위 3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임.
3) 수입가격은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부위별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1 2 3 4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2.1 축산물(쇠고기)

□ 이행 5년차 미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20% 상승, 전년 대비 11.1% 하락

* 미산 쇠고기 관세 하락에도 불구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상승
다만, 이행 5년차 미산 수입가격은 미국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하락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7,704	7,934	8,536	9,669	10,389	9,241	20.0	-11.1
	수입단가(달러/kg)	4.9	5.13	5.79	6.96	7.10	6.29	28.4	-11.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40	37.3	34.6	32	29.3	26.6	-33.5	-9.2
호주	수입가격(원/kg)	7,338	8,428	8,217	8,300	9,181	8,967	22.2	-2.3
	수입단가(달러/kg)	4.67	5.34	5.36	5.74	6.03	5.85	25.3	-3.0
뉴질랜드	수입가격(원/kg)	5,470	6,172	6,232	7,093	6,844	6,668	21.9	-2.6
	수입단가(달러/kg)	3.48	3.91	4.07	4.81	4.46	4.27	22.7	-4.3
국내수급	생산량(천 톤)	216	234	260	261	255	219	1.4	-14.1
	1인당 소비량(kg)	10.2	9.7	10.3	10.8	10.9	11.5	12.7	5.5

주 1) 수입가격은 FTA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관세율은 분석에 사용한 3개 세번(냉장·냉동 쇠고기, 냉동갈비)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2.1 축산물(돼지고기)

□ 이행 5년차 미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4.3%, 전년대비 14.7% 하락

*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9% 상승하였으나, 2014년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 철폐와 냉동 목살 등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가격은 하락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3,088	3,784	3,257	3,610	3,465	2,955	-4.3	-14.7
	수입단가(달러/kg)	2.21	2.89	2.65	3.16	2.94	2.54	14.9	-13.6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5	16	12	8	4	0	-100	-100
EU	수입가격(원/kg)	3,944	4,274	3,979	3,884	3,554	3,376	-14.4	-5
	수입단가(달러/kg)	2.81	3.18	3.11	3.26	2.88	2.73	-2.8	-5.2
국내수급	생산량(천 톤)	712	750	854	830	849	882	23.9	3.9
	1인당 소비량(kg)	19.1	19.2	20.9	22.2	22.8	23.3	22	2.2

주 1)수입가격은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협정관세율은 냉동돼지고기(목살, 전.후지)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2.1 축산물(닭고기)

□ 이행 5년차 미산 닭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28.3%, 전년 대비 25.1% 하락

* 미산 닭고기 수입단가는 FTA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AI 영향 등으로 수입량 회복 지연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1,826	2,202	1,983	1,771	1,749	1,310	-28.3	-25.1
	수입단가(달러/kg)	1.36	1.66	1.56	1.48	1.38	1.03	-24.3	-25.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0	18	16	14	12	10	-50.0	-16.7
브라질	수입가격(원/kg)	3,232	3,449	3,255	3,335	3,143	2,499	-22.7	-20.5
	수입단가(달러/kg)	2.40	2.55	2.48	2.64	2.31	1.79	-25.4	-22.5
국내수급	생산량(천 톤)	407	464	473	528	585	599	47.2	2.3
	1인당 소비량(kg)	9.77	11.60	11.50	12.80	13.40	13.90	42.3	3.7

주 1) 수입가격은 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협정관세율은 냉동닭다리를 기준으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2.1 축산물(유제품)

□ 이행 5년차 미산 치즈 및 조제분유 수입량은 FTA TRQ 물량 확대 및 관세율 인하 불구하고 3년차부터 감소, 수입단가가 낮은 EU·뉴질랜드 등으로 수입선 전환

* 탈·전지분유의 TRQ 초과 물량에 대해 176%의 고율 관세율 적용, 이행 5년차부터 매년 3%씩 복리 증량, 조제분유의 TRQ 물량은 FTA 이행 10년차부터 증량, 초과 물량 관세율은 10년간 단계적 철폐

<미국산 치즈·분유 FTA TRQ 및 수입 동향>

단위: 톤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치즈	FTA TRQ	-	7,000	7,210	7,426	7,649	7,879
	수입량	9,307	23,157	33,959	52,885	47,250	35,271
분유 (탈지+전지)	FTA TRQ	-	5,000	5,150	5,305	5,464	5,628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조제분유	FTA TRQ	-	700	721	743	765	788
	수입량	158	266	141	136	82	50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 2 3 4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2.2 과일

□ 이행 5년차 미산 과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114%, 수입량은 62.6% 증가

- 오렌지, 포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체리, 석류, 레몬과 자몽 수입액은 감소

<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주요신선과일	오렌지	수입액	110	211	186	156	163	210	91.4	28.8
		수입량	92,564	166,931	145,741	91,209	102,884	146,483	58.3	42.4
	체리	수입액	30	81	88	123	120	110	267.4	-8.3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076	12,387	230.5	2.6
	석류	수입액	10	19	28	24	19	10	0.5	-44.9
		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638	4,333	-11.4	-49.8
	포도	수입액	9	16	20	20	18	23	153.1	28.0
		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034	7,523	98.0	24.7
	레몬	수입액	8	15	24	25	33	31	305.3	-7.2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962	13,152	186.9	1.5
	자몽	수입액	7	11	12	14	19	16	145.4	-13.2
		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116	11,821	102.1	-16.3
전체 과일		수입액	216	411	432	421	442	463	114.1	4.8
		수입량	134,542	227,088	222,165	162,324	179,929	218,786	62.6	21.6

주 1) 석류는 기타과일 중 HSK 0810909000 기준임. 기타 미국산 신선과일로는 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 등이 있으나 수입규모는 미미함.
2) 전체 과일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의 모든 HSK 세번을 포함한 합계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2.2 과일

☐ 2016년 오렌지 협정관세율 : 미국, EU 10%, 호주 20% +계절관세 + TRQ 적용

수출국	수입 시기	기준관세율 (%)	FTA 협정관세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미국 EU	3~8월	50	15	10	5	0	-
	9~2월		50				미국 TRQ물량: 2,898톤 EU TRQ물량: 40톤
호주	4~9월	50	25	20	15	10	-
	10~3월		50				TRQ물량: 20톤

☐ 2016년 포도 협정관세율 : 국가별 관세인하 +계절관세

수출국	세부 품목	기준관세율 (%)	FTA 협정관세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미국	신선	45	34.4	31.7	29.1	26.4	5~10월 15일
			6	0			1~4월, 10월 16일~12월
	건포도	21	0				-
페루	신선	45	45				5~10월
			0				1~4월, 11~12월
	건포도	21	10.5	8.4	6.3	4.2	-
호주	신선	45	45				5~11월
			18	12	6.0	0.0	1~4월, 12월
	건포도	21	0				-

1 2 3 4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2.2 과일

☐ 이행 5년차 미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가격 관세율 하락 효과: 24.1% 추정

- 주요 품목별 관세 하락 효과: 오렌지 26.7%, 체리 19.4%, 포도 31.0%, 레몬 23.1%, 자몽 23.1%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관세율 하락 효과>

단위: 원/kg

구 분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2,469	12,773	5,120	3,965	3,532	2,094
	FTA 발효(B)	1,810	10,300	3,531	3,350	2,717	1,611
관세하락효과(B/A)		-26.7	-19.4	-31.0	-15.5	-23.1	-23.1
신선과일 평균(%)		-24.1					

주: 각 수입 품목은 신선과일을 기준으로 산정

2.2 과일(오렌지)

□ 이행 5년차 미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6.9%, 전년대비 12.1% 하락

* 미산 오렌지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 관세율 하락으로 수입가격 하락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3월~8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1,944	1,860	1,741	2,166	2,059	1,810	-6.9	-12.1
수입단가(달러/kg)	1.2	1.3	1.3	1.7	1.6	1.4	22.8	-10.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50	30	25	20	15	10	-80.0	-33.3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오렌지(080510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오렌지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3~8월까지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 예정).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통계청.

1 2 3 4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2.2 과일(체리)

□ 이행 5년차 미산 체리 수입가격은 발효전 대비 12.4% 하락, 전년대비 8.3% 하락

* 체리가격은 FTA 발효 이후 무관세 적용으로 수입단가와 환율 변동에 의해 영향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11,760	9,780	10,724	9,909	11,230	10,300	-12.4	-8.3
수입단가(달러/kg)	8.4	8.7	9.8	9.4	9.9	8.9	5.0	-10.6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4	0	0	0	0	0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체리(080929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체리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2.2 과일(포도)

□ 이행 5년차 미산 포도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9.5%하락, 전년대비 0.2%하락

* 포도 (계절)관세율은 이행 5년차('16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며, 계절 관세 적용시기(10월 16일~익년 4월)인 10-11월에 미국산 포도 수입 집중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10월 16일~익년 4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관세 유형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3,902	일반관세	3,978	3,906	4,158	4,580	2,785	-28.6	-39.2
		계절관세	3,780	3,467	3,449	3,540	3,531	-9.5	-0.2
수입단가(달러/kg)	2.4	일반관세	2.5	2.6	2.9	3.0	1.8	-24.0	-39.5
		계절관세	2.7	2.7	2.9	3.0	3.0	26.9	3.1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45.0	일반관세	42.3	39.7	37.0	34.4	31.7	-29.6	-7.8
		계절관세	24.0	18.0	12.0	6.0	0.0	-	-

주 1) 수입가격은 신선포도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미국산 포도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되며, 페루는 2011년부터 수입실적이 있음.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1 2 3 4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2.3 곡물

□ 이행 5년차 미산 곡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32.6%, 수입량은 22.7% 감소

* 미산 옥수수 수입은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브라질,러시아 등)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감소세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주요 곡물	옥수수	수입액	315	49	38	282	110	139	-55.8	26.7
		수입량	1,141	115	87	1,021	462	660	-42.2	42.9
	밀	수입액	389	437	428	381	355	291	-25.1	-18.1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6.7	-1.5
	대두	수입액	77	129	160	169	159	124	62.0	-22.0
		수입량	134	191	212	233	252	225	68.3	-10.7
전체 곡물		수입액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32.6	-3.5
		수입량	9,222	6,493	2,857	8,412	6,338	7,131	-22.7	12.5

주: 전체 곡물은 미국산 곡물의 전체 수입량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식용(종자, 사료 등을 제외)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2.3 곡물

□ 이행 5년차 미산 곡물은 대부분 FTA TRQ 물량으로 수입, 관세율 하락효과 작음.

* 주요 품목별 관세하락 효과: 옥수수 1.7%, 밀 1.8%, 대두 0.9%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구 분		옥수수	밀	대두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252	308	671
	FTA 발효(B)	248	303	666
관세하락효과(B/A)		-1.7	-1.8	-0.9
주요 곡물 평균(%)		-1.6		

주: 각 수입 품목은 식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1 2 3 4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2.3 곡물(옥수수)

□ 이행 5년차 미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25.4%(전년 대비 9.0%) 하락

* 미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가격이 더 크게 하락(국내 옥수수 수입선 전환)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332	481	479	297	272	248	-25.4	-9.0
	수입단가(달러/kg)		0.28	0.42	0.44	0.28	0.24	0.21	-23.5	-11.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팝콘용 ASG	물량(톤)	-	5,112	6,390	7,668	8,946	10,224	-	14.3
		관세(%)	630	601	572	544	515	486	-22.9	-5.6
	기타 옥수수 ASG	물량(톤)	-	187,547	234,434	281,321	328,207	375,094	-	14.3
		관세(%)	328	313	298	283	268	253	-22.9	-5.6
	수입량(천 톤)		1,141	115	87	1,021	462	660	-42.2	42.9
브라질	수입량(천 톤)		139	419	694	236	390	323	132.1	-17.3
	수입단가(달러/kg)		0.30	0.30	0.32	0.26	0.21	0.20	-34.3	-8.3
러시아	수입량(천 톤)		0	0	0	225	372	942	-	153.0
	수입단가(달러/kg)		1.40	0.00	0.00	0.26	0.21	0.19	-86.1	-7.2
아르헨티나	수입량(천 톤)		4	127	117	1	118	201	4867.2	70.9
	수입단가(달러/kg)		0.54	0.31	0.30	0.95	0.22	0.18	-65.9	-14.7

주 1) ASG 물량 미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입옥수수에 대한 WTO TRQ 물량과 FTA TRQ 물량이 모두 미국산에 배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수입가격을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2.3 곡물(밀)

□ 이행 5년차 미산 밀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21.5%, 전년대비 14.7% 하락

* 미산 밀 기준 관세율(1.8%)이 매우 낮고, FTA 발효즉시 철폐되어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영향은 제한적, 대부분 수입단가에 의해 영향을 받음. 최근 밀 수출국의 풍작으로 수입단가가 전반적으로 하락

<미국산 밀(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386	407	413	363	355	303	-21.5	-14.7
	수입단가(달러/kg)		0.33	0.36	0.38	0.34	0.31	0.26	-19.9	-16.8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제분용	1.8	0	0	0	0	0	-100.0	-
		기타	1.8	0	0	0	0	0	-100.0	-
	수입량(천 톤)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6.7	-1.5
호주	수입가격(원/kg)		387	383	434	361	329	295	-23.8	-10.2
	수입단가(달러/kg)		0.33	0.33	0.39	0.34	0.29	0.25	-22.7	-12.5
	수입량(천 톤)		840	1,028	954	1,023	1,074	1,052	25.2	-2.1
캐나다	수입가격(원/kg)		486	484	430	389	381	315	-35.3	-17.5
	수입단가(달러/kg)		0.43	0.42	0.39	0.37	0.34	0.27	-37.5	-19.5
	수입량(천 톤)		167	179	170	167	202	148	-11.0	-26.4

주 1)수입가격은 메슬린 외 기타, 밀가루 14개 세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수입량은 밀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14개 세번의 합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1 2 3 4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2.3 곡물(대두)

□ 이행 5년차 미산 대두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47.0%. 전년대비 10.6% 하락

* 기준관세율이 낮고 대부분이 FTATRQ 물량 내에서 수입, 미산 대두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변동에 의해 좌우

<미국산 대두(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1,257	795	862	796	744	666	-47.0	-10.6
	수입단가(달러/kg)		0.60	0.68	0.75	0.73	0.63	0.55	-2.7	-12.7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FTA TRQ	HS1201(톤)	-	10,000	20,000	25,000	25,750	26,523	-	3.0
		관세율(%)	5	0	0	0	0	0	-100.0	-
	수입량(천 톤)		134	191	212	233	252	225	66.8	-10.7
중국	수입가격(원/kg)		858	1,143	1,265	1,174	1,392	1,180	37.5	-15.3
	수입단가(달러/kg)		0.64	0.97	1.10	1.06	1.18	1.02	57.9	-13.5
	수입량(천 톤)		153	124	55	75	27	37	-76.0	37.4

주 1) 수입가격은 콩나물용, 기타, 대두로 만든 것(분쇄)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수입량은 대두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3개 세번의 합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03 한미 FTA 이행과 영향

<'13년~'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제도 발동 현황>

단위: 원/ha

구 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3년치)	발동요건 충족국가(해당 FTA)
2013년	한우	13,545원/600kg	811,161원/마리	**미국(2012)**
	한우송아지	57,343원/마리	899,430원/마리	**미국(2012)**
2014년	수수	127,474	-	**미국(2012)**
	감자	1,270,814	-	EFTA(2006), ASEAN(2007), 인도(2010), EU(2011), 페루(2011), **미국(2012)**
	고구마	8,570	-	ASEAN(2007)
	한우송아지	46,923원/마리	886,938원/마리	칠레(2004), **미국(2012)**
2015년	대두	469,200	-	싱가포르(2006), 인도(2010), **미국(2012)**
	감자	2,142,850	-	EFTA(2006), ASEAN(2007), EU(2011), 페루(2011), **미국(2012)**
	고구마	45,300	-	ASEAN(2007), 페루(2011), **미국(2012)**
	체리	2,600,640	33,140,100	**미국(2012)**
	멜론	141,300	-	**미국(2012)**
	노지포도	1,133,670	58,976,610	인도(2010), 페루(2011), 터키(2013)
	시설포도	3,512,600	87,411,480	칠레(2004), ASEAN(2007), **미국(2012)**
	밤	419	24,964,200	EU(2011)
	닭고기	19원/마리	561원/마리	칠레(2004), **미국(2012),** EU(2011)
2016년	당근	98,970	-	ASEAN(2007), **미국(2012)**
	노지포도	1,166,530	58,353,210	페루(2011), 터키(2013)
	시설포도	3,236,280	90,145,080	칠레(2004), **미국(2012)**
	블루베리	15,667,540	165,704,880	칠레(2004), **미국(2012)**
2017년	도라지	1,730,300	-	**미국(2012),** 중국(2015)

주 : ( )는 FTA 발효연도임.

<'13년~'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

구 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			
		대상면적 또는 마릿수(A)	신청면적 또는 마릿수(B)	소요금액 (천원)	비중 (%) (B/A)
2013년	한우 (마리)	667,670	602,836	8,165,000	90.3
	한우송아지 (마리)	329,685	299,749	17,189,000	90.9
2014년	수수 (ha)	1,514	610	80,312	40.3
	감자 (ha)	27,430	11,329	15,903,836	41.3
	고구마 (ha)	22,207	508	4,628	2.3
	한우송아지 (마리)	389,995	345,480	16,370,778	88.5
2015년	대두 (ha)	74,652	13,130	6,161,049	17.6
	감자 (ha)	21,472	10,827	23,314,430	50.4
	고구마 (ha)	20,515	624	32,443	3.0
	체리 (ha)	144	55	144,658	38.2
	멜론 (ha)	1,500	758	107,498	50.5
	노지포도 (ha)	12,690	9,670	10,974,753	76.2
	시설포도 (ha)	2,707	1,573	5,521,624	58.1
	밤 (ha)	25,485	1,867	783	7.3
	닭고기 (kg)	497,800,000	45,523	842,886	7.3
2016년	당근 (ha)	3,114	1,054	104,579	33.8
	노지포도 (ha)	12,346	9,511	11,084,587	77.0
	시설포도 (ha)	2,030	1,558	5,053,657	76.7
	블루베리 (ha)	6,155	1,410	22,273,643	22.9
2017년	도라지 (ha)	미산정	미집계	미집계	-

주 : 소요금액은 신청금액이며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 2 3 4 한미 FTA 이행과 영향

<'13년~'17년 FTA 폐업지원과 폐업농가 현황>

단위 : 호, %

구 분		폐업 대상농가 및 폐업농가 현황			
		대상 농가 수 (A)	폐업농가 수 (B)	비중 (B/A)	해당 FTA
2013년	한우	119,000	18,260	15.3	**미국**
	한우송아지				
2014년	한우송아지	69,075	3,010	4.4	칠레, **미국**
2015년	체리	299	13	4.3	**미국**
	노지포도	27,566	3,702	13.4	인도, 페루, 터키
	시설포도	7,314	681	9.3	칠레, ASEAN, **미국**
	밤	15,335	144	0.9	EU
	닭고기	1,517	70	4.6	칠레, **미국**, EU
2016년	노지포도	37,645	3,974	10.6	페루, 터키
	시설포도	5,592	514	9.2	칠레, **미국**
	블루베리	15,140	1,490	9.8	칠레, **미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04 향후 과제

□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신청률 제고 및 농가수혜 확대 노력 필요

- FTA 피해보전 농가신청률(면적 기준) : 한우 89-91%, 포도 58-77%,고구마 3% 등
- 농가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준비 철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등

□ 수입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폐업에 따른 산업 위축 및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블루베리 폐업농가의 복숭아 재배로 복숭아 과잉생산 및 가격 하락 야기

구분		2016년 (A)	2017년 (B)	증감률 (B/A)
복숭아	재배면적(ha)	19,877	20,578	3.52
	판매가격(원/kg)	14,428	11,266	-21.9

주 1. '17년 재배면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판매가격은 04월~07월 월별 가락시장 도매가격(전체금액/전체반입량)을 평균한 값임.

- FTA 폐업지원금 상한 설정 검토

* 예시) 블루베리 폐업지원금 최대 지원금액 : 8억 7천만 원(약 5.2ha, 정읍 모닝팜 농장)

□ 수출가공식품과 국내산 농산물 연계율 제고 및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필요

- 미국산 농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1.3%, 대미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48.7%

□ 실효성 높은 대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부문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한·미FTA 재논의
농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주제발표 2

한·미FTA 재협상 대비 농업부문 대응방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미FTA 재협상 대비
농업부문 대응방향

임 정 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 한·미 FTA 이행 평가

□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발효 이후, 지난 5년 동안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교역 부진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한·미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FTA를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양국간 교역 증가**)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3.5% 감소, 미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0.4% 감소한 반면에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씩 증가

- 양국 간 상품 교역액은 1,097억불(2016년 기준) 수준이며, 현재 미국은 한국의 수출 대상국 2위(차지비중 12.2%), 수입 3위(11.1%)국가 이고, 한국은 미국의 교역규모 6위, 무역적자 규모 8위 국가임.

○ (**양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증가**)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모두 상승했음.

-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2011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p 상승했으며,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동안 8.50%에서 10.64%로 2.14%p 상승하였음.

○ (**무역수지 측면**)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수지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양국간 교역에서 연간 200억 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

고 있으나, 2016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FTA 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함.

- 만일 양국간 FTA 미체결을 가정하는 경우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5년 기준으로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 추정함.
- 특히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분야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지는 연간 10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연간 70억 달러 내외의 미국산 무기구입 등을 감안할 경우 양국 간 실질적인 무역수지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국간 투자확대**) FTA 발효 이후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양국 간 투자 규모는 확대 추세에 있어 투자분야에 있어 양국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음.
- (한국→미국) 미국은 한국의 제1위의 투자 대상국으로 2016년 기준 180억 달러를 투자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미국→한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국가로 FTA 발효 이후 총 투자유입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7.3%에서 2016년 18.2%로 증가 추세임.
-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한국의 對美 투자 누적액은 약 512억 달러로 미국의 對韓 투자 금액 202억불을 크게 상회하여 한국의 투자로 인해 오히려 미국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 한·미 FTA에 대한 미국내 평가는 긍정적, 부정적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7년 통상정책 어젠다 및 연례보고서 「2017 Trade Policy Agenda & Annual Report (17.3.1)」에 따르면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가 FTA 발효 이후 2배 이상 증가, 이는 미국민들이 한·미 FTA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함.
- 반면 동일 기관인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1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17.3.31)」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교역규모 확대 및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증가**) 한·미 FTA 발효 이후 산업별 영향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 특히 농업분야는 FTA 체결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짐으로써 한국 농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에 미국

에게는 상당한 통상이익을 안겨준 대표적 분야임.

○ 한·미 FTA 체결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이 증가추세 인데, 대미 농산물 수출이 FTA 발효전 5개년 평균 399백만불(2007년~2011년 올림픽 평균) 수준에서 718백만불(2016년)로 증가추세에 있고,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도 FTA 발효전 5개년 평균 6,295백만불(2007년~2011년 올림픽 평균) 수준에서 7,182백만불(2016년)로 증가하였음.

- 이렇게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모두 증가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농업분야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FTA 발효전 5개년 평균 59억불(2007년~2011년 올림픽 평균)적자 수준에서 2016년 65억불까지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물 모든 분야의 對美 교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무역수지 적자의 크기는 농산물(3,723백만불)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축산물(2,073백만불), 임산물(669백만불)의 순임.

○ 한·미 농림축산물 교역은 전체 교역의 91%가량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수입구조라 할 수 있으며, 농업분야 교역에 관한 한 양국간 FTA 협정이행이 심회될수록 대미 수입물량과 금액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한·미 FTA 재협상 동향과 쟁점

가. 협상 동향과 전망

□ 지난 7월 13일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에 서한을 보내 8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그 동안 논의되던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함.

○ 미국이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는 긴급하게 협정이행과 관련해서 논의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공식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회의가 열리도록 한다는 한-미 FTA 협정문 22조 2항에 근거한 것임.

□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가 열렸지만 양측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종료됨.

○ 미국은 빠른 시일내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하자고 공식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 이익 균형을 가져왔으므로, 우선 양국간 한·미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객관적 분석과 평가부터 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추후 일정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종료됨.

- 미국 측은 FTA 개정협상 개시에 초점을 맞췄을 뿐 한국 측의 객관적 조사 및 평가 분석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방한하지 않은 탓에 이날 대표단이 한국 측 제안에 곧바로 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임.

□ 양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관련 공식적 논의가 당초 미국의 생각과 달리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보다 현재 재협상이 시작된 미국-캐나다-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작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협상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큼.

- 미국 정부는 2017년 5월 의회에 NA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하였으며, 90일간의 대국민·업계 회람을 거쳐 8월 16일부터 첫 협상을 시작한 NAFTA 재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NAFTA 재협상이 난항을 보일 경우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사안이 예상보다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다만,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우리 측의 한-미 FTA 이행관련 객관적 조사 및 평가 제안을 거부하고, '한·미 FTA 폐기'와 같은 강수를 제안해 한국을 개정협상 테이블에 빨리 앉히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bad deal)'로까지 지칭하며 개정협상의 필요성을 대선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만큼 여러 경로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미국 모두 FTA 개정협상에 대해 강한 자기 입장을 표명한 만큼 각자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고, 북핵,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같은 다른 변수도 한·미 FTA 개정협상 일정수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교착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큼.

○ 한·미 양국의 국내 절차를 감안할 때, 한·미 FTA에 대한 공식적 개정협상의 시작은 빨라야 2018년 상반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 : (1단계)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정에 대한 개정여부, 협상의 범위 등을 검토, (2단계) 양국이 협정문 개정에 합의한 경우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미국은 무역촉진권합법(TPA)에 따라 국내 절차를 거쳐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일부 개정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개정여부에 대한 합의 실패 시에는 협정 폐기), (3단계) 개정협상 진행 (4단계) 개정안 합의 시 국내 절차 완료 후 발효(개정안 합의 실패 혹은 국내비준 실패 시 협정 폐기)

- 특히 미국은 행정부가 협상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의향서를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개정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되는 시점은 빨라야 2018년 상반기로 전망됨.

□ 아무튼 한·미 FTA 개정작업은 국제경제, 외교, 정치적 여건과 상황, 공식적 개정협상 전에 FTA 이행평가를 선행하자는 우리 제안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과 대응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주요 쟁점

□ (**협상의 범위**)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은 한-미 FTA 개정협상의 성격과 범위가 협정문의 일부개정을 위한 협상이냐? 아니면 전면적인 개정협상이냐? 임.

○ 아직 미국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재협상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그동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해온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 공정한 시장접근 제공기회 확보를 통한 자국의 통상이익 확보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분야뿐만 아니라 무역규범 등 전 분야에 걸쳐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큼.

- 이런 판단의 근거는 NAFTA 재협상 추진 목표와 전략과 관련하여 미국 USTR이 제시한 로드맵 “USTR Negotiating Objectives for NAFTA(7.17)”에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무

역적자 감축을 무역협정 재협상의 특별한 목표로 설정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NAFTA 재협상을 위한 로드맵은 미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의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불공정무역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미국의 협상목표는 무역수지 개선에 둘 것으로 보이며, 개정협상의 주요 쟁점은 우선적으로 자동차·철강 등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세인상 및 비관세조치(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자율수출규제 등) 도입,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분야와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부문 개방 확대, 자국 통상이익 확보를 위한 원산지 규정,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TBT/SPS 관련 투명성 확보 등 WTO PLUS 적인 무역규범 개정 등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의 교역장벽 강화조치를 주장할 것으로 보임: 자동차, 철강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이자 한·미 FTA 이후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으로 주요 이슈가 될 전망

○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법률 등 서비스와 에너지 등 미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 요구

○ 중국, 베트남 등 제 3국산 원재료를 활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금 및 환율조작 금지 등 을 요구할 전망암.

□ (**농업분야 포함여부와 예상 의제**) 또한 가장 우려스런 사안은 미국이 그 동안 한-미 FTA 체결 이후 많은 통상이익을 확보해 온 농업분야에 까지 더 큰 폭의 시장개방 확대와 무역원활화 차원의 농업관련 규범강화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임.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금번 한-미 FTA 재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제외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은 통상이익 확보차원에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자국이 경쟁력이 있는 상품분야와 자국에게 유리한 무역규범 분야까지 포괄하여 재협

상을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만일 미국이 자국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농업분야에까지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경우 요구 가능한 사항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의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산 쌀 국별쿼터 확대 요구와 함께 사과, 감자 등 동식물검역(SPS) 조치로 미국산 수입이 제한 중인 품목에 대한 신속한 수입허가 요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쌀 시장개방 요구는 쌀 관세화 검증을 위한 양자 협상과 연계하여 나타날 기능성이 있으며, 아무튼 미국은 우리에 비해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개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은 비록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국이 주도해 온 TPP 협정에 대해 서명 철회를 선언하였지만 농업관련 TPP 협정문을 한-미 FTA 협정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음: TPP 협정에서 합의된 동식물검역 및 위생조치(SPS), 관세할당제도(TRQ), 수출보조금지 등 농업관련 규범들은 무역원활화 및 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제정되어 미국과 같은 수출 선진국에게는 유리한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농식품 수입국에게는 부담스런 조항들 많이 있음.

○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과정에서 나타날 농업부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국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됨.

3. 농업부문 대응 방향과 전략

□ (**농업부문을 재협상 대상에서 제외**) 우리나라는 매년 200억 달러 내외의 무역흑자를 미국으로부터 시현하고 있지만 대미 무역 흑자의 대부분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금속 등 제조업분야임. 반면에 농업분야의 경우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60억 불 이상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는 분야임을 적극 강조하여 농업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실제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경우도 자동차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관세가 철폐되지도 않았고, 철강제품 대부분은 이미 FTA 이전부터 관세가 없었음.
- 즉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은 미국의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와 제조업의 낮은 경쟁력이 원천적 요인이지 한-미 FTA 이행으로 인한 효과 때문만이 아닐 가능성이 큼.

○ 한-미 FTA는 실질적으로 쌀을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체리와 오렌지, 건포도 등 과일류 등의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 주었음.

○ 즉 엄밀한 의미로 양국간 FTA로 더 큰 혜택을 본 국가가 미국일 가능성이 높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을 경우 대한(對韓) 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지금보다 큰 400억 달러이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더 커졌을 것이라는 추정치는 타당성이 있는 것임.

□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이행 평가 실시 및 이익의 균형 요구)** 만일 미국 측이 농업분야까지 포함하여 개정작업을 요구 할 경우,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업부문 이행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연구,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오히려 농업부문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표적 무역적자 산업인 농업에 대한 양허수준 조정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농업분야에 대한 이행평가를 토대로 미국 측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입각한 비객관적이고,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합리적으로 견제해 나가면서, 한·미 FTA 재협상괴정에서 농업분야 추가개방 요구 시 미국이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오히려 이익의 균형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분유 등 유제품, 오렌지 체리 등 과일류에 대한 관세율 조정, TRQ 물량 및 확대방식 수정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분야에서는 이익을 본 반면에 농업, 서비스, 투자 등에서는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 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우리 농업부문은 미국과 협동연구 혹은 단독으로라도 한·미 FTA 이행으로 양국 농업의 득실을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엄밀한 이행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미국과의 협상이나 국내 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즉 미국이 우리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까지 요구할 경우,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개방은 절대 불가하고, 양허 재조정(rebalancing)을 통한 이해의 균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 8,200만달러인데 반해 한국산 수출액은 7억 1,800만달러로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며, 우리나라가 사주는 금액

이 미국에 비해 10배나 많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현재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진행 중인 NAFTA 재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국의 협상전략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앞으로 전개될 한·미 FTA 협상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오히려 자국의 농업분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미국내 한·미 FTA에 대한 우호적 평가 활용)** : 미국 내 농업부문의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활용하는 전략 구사가 필요함.

○ 대부분의 미국 농축산업계는 자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에서 한·미FTA가 가장 미국 농산업의 이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지난 6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개최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한 공청회'에서 미국 곡물협회는 “한·미FTA가 보여준 긍정적 영향을 토대로 NAFTA 협상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미국 쇠고기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축산협회, 북미육류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 등 3개 단체는 공동 서한을 내고 “한·미 FTA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농업부문 양보의 목소리 사전 차단**) 한·미 FTA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미국을 달래기 위한 양보의 수단으로 농축산물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됨.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적 개방은 무엇보다 국내 농업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FTA 협상전략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지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제 무역자유화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무역자유화 확대를 요구해 왔고, 국내적으로도 제조업과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다른 분야의 통상이익확보 차원에서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을 위주로 양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출현해 왔으나 이는 농산물의 특성을 모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

- 농산물은 먹거리로서 어떤 형태로든 수입산 농산물이 많아지면 국내산 농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직간접적인 소비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농업생산자들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 생산대체를 함으로써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마저도 개방의 피해 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 아울러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이미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FTA와 향후 체결될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양허한 높은 수준의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임.

□ (**농업과 농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기회로 활용**) 한·미 FTA 재협상을 계기로 WTO 출범과 동시다발적 FTA 협정체결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부문에 대한 종합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왜 농업이 어렵고, 정책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한·미 FTA 협정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부문별 극명한 득과 실의 내용을 분석하면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수출 제조업은 한·미 FTA로 특혜를 받아온 반면 국내 농축산업은 큰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음을 명확히 보일 수 있을 것임.

○ 만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농업부문을 포함한 재협상 요구와 함께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더라도 한·미FTA를 우리도 포기할 수 있다는 배짱으로 대응하되, 이를 국내 부문간 갈등이 아닌 국민들의 여론 결집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

○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미국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낳을 것이고, 특히 농축산물은 EU, 캐나다, 호주산 등으로 자연적으로 수입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산업부문간, 계층간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

한·미FTA 재논의
농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지정토론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 가나다 순 –

지정토론

한·미FTA 재협상 한우산업 요구사항

김 홍 길 전국한우협회장

1. 한·미 FTA 이후 한우산업

한·미 FTA로 인해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하는 대기업은 특혜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이 땅에 뿌리 내려 살아왔던 농민들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한미 FTA로 인해 쇠고기 소비량은 늘었지만 자급율은 계속 떨어졌고, 한미 FTA 피해에 따른 폐업 조치로 인해 2011년말 15만7천농가는 반토막 되어 현재 8만5천농가만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됐던 시점에서 정부는 수입쇠고기의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국내산 쇠고기도 생산비를 낮춰 대응해야 한다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입육의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다양한 스펙의 고품질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상품의 가짓수가 늘어가면서 수입육 판매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미 FTA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세계화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희생양은 한번으로 족하다. 반토막된 한우농가의 존립과 한우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표1. 한·미 FTA 전 후 한우산업 추이]

연도		한우농가 수 (12월 기준)	공급량 (천톤)		1인당 소비량(kg)	자급도(%)
			생산	미국산쇠고기 수입량		
발효 전 평년	2007	178,721	171.3	14.6	7.6	46.4
	2008	175,611	173.8	53.3	7.5	47.6
	2009	169,011	197.7	49.9	8.1	50.0
	2010	166,226	186.2	90.5	8.8	43.2
	2011	157,559	216.4	107.2	10.2	42.8
발효 후 이행	2012	141,495	234.5	99.9	9.7	48.2
	2013	119,056	259.9	89.2	10.3	50.1
	2014	99,285	260.8	104.9	10.8	48.1
	2015	89,403	254.9	112.4	10.9	46.0
	2016	85,040	222.3	153.2	11.4	38.0

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검역기준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 현실적 합의사항 변경 추진

① 쇠고기 세이프가드 기준 재정비, 관세 철폐기간 연장

현재 세이프가드 기준이 27만톤으로 FTA 발효 후 5년차인 2016년(관세율 26.6%적용)에는 15만3천톤이 수입되어 세이프가드 기준에 적용되지 않았다. 종전 기준이 워낙 높다보니 단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그동안 한우업계의 노력과 2011년~2014년 소값 폭락의 영향으로 한우고기의 저변이 확대 됐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관세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우고기 가격 인하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간 수입량을 바탕으로 삼아 세이프가드의 발동기준을 재설정해 국내산 쇠고기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종전 단계적 관세 철폐기간인 15년만으로는 한우의 육종 개량 및 사육 기반 확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힘든 실정이다. 재협상 테이블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보호를 위해 철폐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으로 설정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 원/kg, %

구분		쇠고기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10,219
	FTA 발효(B)	9,241
관세율 하락효과(B/A)		-9.6

주) 쇠고기는 냉동, 냉장 쇠고기, 냉동갈비 대상으로 분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② 수입 위생조건 강화

지난 7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2003년 이후 5차례나 발생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안전성을 확보할 때 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검사량을 확대한 것 말고는 별 대응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어느 농장에서, 어느 사료를 먹어, 광우병이 걸린 소가 어떤 송아지를 낳은 지 파악할 수 없다. 2008년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있으며, 부칙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된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햄버거병 등을 유발하는 대장균이 비위생적인 소 내장에 서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비위생적이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수입금지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수입육 검역을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검역주권은 국민을 지

키기 위한 나라 고유의 권한으로써 민간업체에 양도 시 국가적인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 민간업체가 수입육 검역에 참여할 경우 조직 이익 우선에 입각하여 국가통제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검역주권의 포기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우병 재발의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국가에서 전적으로 검역을 진행하여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광우병 발생일지]

년도	내역
2003년	미국 첫 광우병 발생(워싱턴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2005년	텍사스주 광우병 발생
2006년	앨라배마주 광우병 발생
2012년	캘리포니아주 광우병(비정형 BSE) 발생
2017년	앨라배마주 광우병(비정형 BSE) 발생

3. FTA 재협상 대응, 농가 직접 지원 확대

① 한·미 FTA 지원대책 추가

지난 한·미 FTA 체결 시 축산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6.2조원을 사용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가축개량사업,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에 사용됐다. 하지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그리 많지 않아 향후 재협상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의 환경개선 촉구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허가축사에 다수의 축산농가가 해당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별 해당 공무원의

해석이 다르며, 일시 진행함에 따라 측량업체의 섭외가 어려우며, 비용부담이 크다. 이에 무허가 실태가 어떠한 양태이든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뒤 적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2021.3.24 일까지) 및 후속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농가 생산 가격 안정화

한우생산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번식농의 소득기반은 언제나 불확실해 폐업이 연일 이어져 왔으며, 그에 따른 송아지 가격 등락폭이 커져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이 어렵다. 2012년 발동기준 변경 후 지급되지 않은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다시 환원하여 번식농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보한다면 송아지 가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씨수소 중심의 한우개량을 탈피해 번식 강소농 육성을 통한 체계적 암소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우수한 송아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지자체 자율개량사업과 연계하며, 암소개량사업을 통한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자체 우량 암소 육성을 위한 수정란 생산 공급 사업 등과 연계해 암수 개량을 연동함으로써 한우의 우수한 형질을 개량해 나가야 한다.

②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힉스는 ‘어떤 정책의 시행으로 손해를 본 자가 이익을 본 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으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한 것이므로 그 정책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며 보상의 원칙을 역설했다.

한·미 FTA로 인해 농민이 피해를 봤다면 이익을 얻은 기업에서 보상해야만 사회 전체의 복지가 늘어난다.

이전 한·미 FTA 체결 당시 농민들은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FTA로 인한 특정기업의 이익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농민.농업만이 희생당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안 불발로 우여곡절 끝에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과시키긴 했으나 1000억원씩 10년간에 거쳐 1조원을 조성키로한 목표와는 달리 현재

300만원이라는 초라한 조성 실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제성이 없는 기금 조성으로는 피해를 받은 농민.농촌에게 보상할 길이 만무하다.

재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FTA 시행 전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 또는 농어촌 상생기금의 강제성 부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산업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 후 대(對)미 수출 증감 추이] 단위 : 만달러

구분	2012년	2016년	증감율
자동차	108억3300	160억1800	47.9%
자동차 부품	56억4200	63억7600	13.0%
반도체	26억1100	33억5200	28.4%
원동기·펌프	13억8000	16억6400	20.6%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③ 자조금 법 개정을 통한 수출확대 추진

자조금의 목적은 농가 스스로 모금하여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자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그 예산의 쓰임새를 달리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정 부분 생산자단체의 정책활동비로 지원하여 생산자단체가 대외 무역 및 정책교섭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촉진 및 교육 등 한정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권익보호와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있으나 협회에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현재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건비 및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며, 정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예산부족의 문제에 치닫게 됐다.

이에 축산자조금 법률안을 개정하여 자조금의 일부를 생산자단체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입육 촉진법이 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사회 규범화로 전체 국민의 인식에 적용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 후 한우는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9.5% 하락했다. 이에 반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 쇠고기의 수입량은 동년 대비 21.4% 증가해 부정청탁금지법이 '수입농축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전락했다. 국익을 위한 FTA라며 피해본 농가에게 FTA 지원은 미미한 반면 같은 국가 내 다른 부서에서 시행한 김영란법으로 인해 한우산업의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우는 평월 소비가 78천두지만 명절에는 125천두까지 늘어 평월 대비 1.6배까지 소비량이 증가하나 한우선물세트의 99%가 5만원 이상이며, 93%가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가액 5만원을 맞추기 힘들다. 식사 기준 또한 3만원으로는 한우 식사가 매우 어려워 한우전문점의 경우 저년 대비 20% 이상 수입이 감소됐다.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 8호의 '사회상규'에 대한 법 개정이 추석 전 이뤄져야 한다. 1차산업 생산물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액조정 만으로는 수입산만 소비장려가 되므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특성을 고려해 중량(3kg)로 설정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전후 쇠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구분	1~9월			10월~익년 3월		
	2015년	2016년	증감률 (%)	2016년	2017년	증감률 (%)
한우 도축마릿수(두)	692,554	554,357	-20.0	392,582	372,008	-5.2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원/kg)	15,944	18,839	18.2	18,265	16,535	-9.5
쇠고기 수입량(톤)	219,898	259,541	18.0	155,102	188,284	21.4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정토론

한·미FTA
낙농품 재협상 대응방안

이 승 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1. 한·미 FTA 협상결과

□ 관세양허

품 목	내 용
분유, 연유, 유당	○ 분유(176%), 연유(89%) : 현행관세 유지 - 무관세쿼터 5천톤(**매년 3%씩 증량, 기간제한 없음**)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 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터 700톤(**매년 3%씩 복리 증량**) ○ 유당(49.5%) : 5년 철폐
치즈	○ 커드 및 치즈(36%) : 10년 철폐 ○ 치즈(36%) : 15년 철폐 - 무관세쿼터 7천톤(**매년 3%씩 복리 증량**)
밀크크림	○ 지방함량 6% 이하(36%) : **15년 철폐** ○ 그 외 지방함량 6% 초과(36%) : **12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36%) : **10년 철폐**
버터	○ 버터(89%) : 10년 철폐 - 무관세쿼터 200톤(**매년 3%씩 증량**)
유장	○ 식용(49.5%) : 10년 철폐 ○ 사료용(49.5%) : 즉시 철폐

자료 : 외교부

□ TRQ 운영 관련 제한사항(협정문 中)

○ TRQ 물량을 생산자단체에 배분하지 말 것

○ TRQ 물량 배분 시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말 것

○ 가공업자에만 제한적으로 TRQ 물량을 배분하지 말 것

※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서 낙농품 제외

2. 유제품 수입동향

□ FTA 체결 이후 유제품 수입 급속히 증가

○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산 유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짐

- (수입물량 확대) '10년 49,380톤 → '15년 92,238톤 (86.8% 증가)
- (시장점유 확대) '10년 21.5% → '15년 36.7% (15.2P 증가)

구분		2010 (A)	2011	2012	2013	2014	2015 (B)	증감 (B-A)
전체		**167,974**	**224,795**	**202,184**	**204,467**	**219,097**	**235,919**	**40.4**
EU	물량(톤)	44,083	77,636	64,633	60,409	73,541	87,458	98.4
	시장점유(%)	27.3	34.7	33.2	33.6	37.8	39.7	12.4P
미국	**물량(톤)**	**49,380**	**62,597**	**63,814**	**78,070**	**99,827**	**92,238**	**86.8**
	시장점유(%)	**21.5**	**23.7**	**27.7**	**33.3**	**41.3**	**36.7**	**15.2P**
호주	물량(톤)	21,587	24,331	19,590	17,543	14,603	18,493	-14.3
	시장점유(%)	16.5	12.9	11.8	9.7	7.1	8.3	-8.2P
캐나다	물량(톤)	11,624	10,586	9,171	8,639	6,437	4,158	-64.2
	시장점유(%)	4.2	3.2	2.9	2.7	1.5	0.6	-3.6P
뉴질랜드	물량(톤)	27,805	36,315	33,134	31,941	17,078	23,698	-14.8
	시장점유(%)	22.7	20.4	20.4	18.2	10	12.8	-9.9P
기타	물량(톤)	13,495	13,329	11,843	7,865	7,611	9,875	-26.8
	시장점유(%)	7.8	5	4	2.5	2.2	1.8	-6.0P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미국산 유제품 수입동향

○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유제품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 평균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한 결과,

; (치즈) 발효 전 12,901톤 수준 → 54,821톤(324% 증가)

; (분유) 발효 전 289톤 → 5,699톤(1,874% 증가)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쇠고기	수입액	653	522	578	764	802	22.8	4.9
	수입량	128	106	101	112	115	-10.1	3.4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102.4	12.9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53.6	24.1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71.1	-83.9
	수입량	39	54	45	65	11	-72.7	-83.4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346.4	-16.8
	수입량	13	32	43	64	55	324.9	-14.1
분유 (탈지+전지)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339.7	-61.0
	수입량	0.3	1.9	6.3	8.0	5.7	1874.1	-28.7
전체 축산물	수입액	823	1,411	1,471	1,878	1,761	114.0	-6.2
	수입량	1,071	1,286	1,209	1,357	1,464	36.8	7.9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치임.
2) 쇠고기의 발효 전 대비 증감률은 미국은 BSE 발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를 고려하여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국산우유 자급률

○ 유제품총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즈, 분유 등 소비량 증가의 대부분을 수입산이 충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산우유 자급률은 FTA 체결이후 **'10년 65.4%에서 '16년 52.9%로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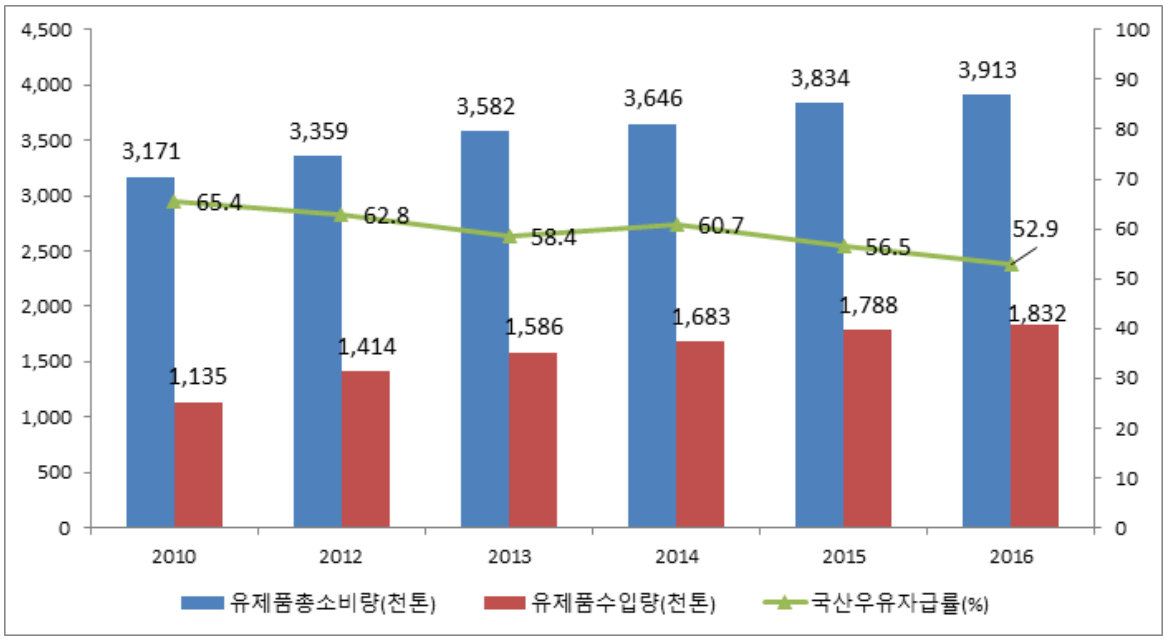

3. 한·미 FTA 협상결과의 문제점

□ 분유 TRQ 기간제한 없이 복리 증량

○ 분유의 경우, 유사대체 품목인 혼합분유가 낮은 세율로 철폐되기 때문에 TRQ 제도의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기간제한 없이 복리로 증량됨에 따라 사실상 관세철폐 효과와 다를 바 없음

※ 탈지, 전지, 연유에 대해 TRQ 5,000톤을 배정하면서 연한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한다는 전례 없는 협상결과를 내놓음

□ 국내 수급과 관계 없는 TRQ 배정방식

○ 국내 수급과 연계하여 TRQ 배정을 '국내산 구매조건'을 반영하여 배정해야 하나,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국내산 구매조건'을 금지하여 국내 수급과 관계없이 TRQ가 배정되고 있음

□ 세이프가드에서 낙농품이 제외됨

○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함

한·미 FTA 유제품 협상결과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증거

① 미국의 유제품수출량 증가에 크게 기여

- 2012.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4.3월까지 협정발효 전년도에 비해 86%가 증가한 4억1천7백만 달러까지 급증

② FTA가 없었다면 한국시장 내 미국산 유제품 입지 감소

- FTA 결과 주요 경쟁자인 오세아니아에 대해 수년간 유리한 고지를 점령, EU와도 대등한 경쟁관계 유지

③ 한·미 FTA 협상결과는 이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있어 좋은 본보기로 작용

- 완전히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 몇 품목을 포함해서 모든 유제품에 대해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기회가 관세철폐 또는 무관세할당물량(TRQ)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이루었음

출처 : 한미 FTA 협상타결 3주년을 기념하여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의 「The U.S. Dairy Export Blog」에 실린 'Shawna Morris'씨의 「3 Ways U.S.-Korea Trade Agreement Has Helped U.S. Dairy 」라는 기고문

4. 한·미 FTA 재협상 방안

□ 유사 및 대체품의 관세 및 TRQ제도 조정 필요

○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및 관세 적용

- 해외사례를 참고, 연한 설정과 TRQ에 대해서도 완전 무관세가 아닌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국경조치 방안 필요

※ 한-EU : TRQ 1,000톤 16년차 1,512톤 고정 / 한-호주 : 양허제외

□ TRQ 배정방식 변경

○ 국내산 구매조건 명시

- 일본의 EU, 호주와 EPA 협상시 국내산 치즈 사용시 수입산 치즈를 배정하는 TRQ 관리방식을 참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방안을 택해서 국내 수급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물량 조정 필요

〈해외사례〉

➜ 일·EU EPA 협정 유제품 TRQ 관리방식 합의내용

* 16년에 걸쳐 3만1천톤까지 증량, TRQ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9.8% 2차 세율 적용
* 국산 대 수입산 비율을 1 : 2 사용시 무관세 적용
* 분유, 유장, 버터 등 치즈 이외의 제품은 TRQ 물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1차 세율 적용

➜ 일·호주 EPA 협정 유제품 TRQ 관리방식 합의내용

* 국산 대 수입산 비율을 1 : 3.5 사용시 무관세 적용
* TRQ에 대해서도 저율관세(1차 세율)를 적용(≠무관세)

○ TRQ 물량 배분시 가공업자에 한정

□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 포함

○ 국내 낙농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

지정토론

한·미FTA 재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 문 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1. 한·미 FTA이후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나라 농축산업

□ 국내 축산물 소비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분을 수입산이 차지

❍ 육류수입량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 ('06)449천톤 → ('16)783
- 미국산 비중은 쇠고기 2위(153천톤), 돼지고기 1위(106천톤), 닭고기 2위(10천톤)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대미 무역적자는 약 60억 달러 수준 지속

❍ 미국 → 한국 농축산물 수출액 : ('12)65.3억 달러 → ('16)68.5
❍ 한국 → 미국 농축산물 수출액 : ('12) 4.7억 달러 → ('16) 7.2

□ 쇠고기를 중심으로 미국산 축산물 수입 증가

❍ 연도별 미국산 축산물 수입현황

(단위 :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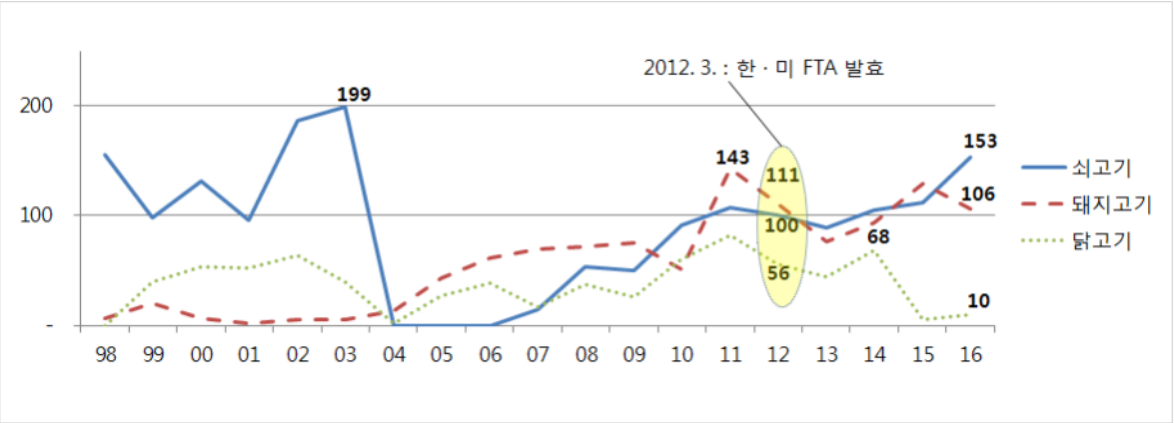

❍ 한·미 FTA 이후 원유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

구 분	'11	'12	'13	'14	'15	'16
소비량(만톤)	352	336	358	365	383	391
생산량(만톤)	189	211	209	221	217	207
자급률 (%)	53.7	62.8	58.4	60.7	56.5	52.9

□ FTA 이후 국내산과 수입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차이 심화

❍ 미국산 주요 축산물(육류 기준) 수입가격은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할 경우 쇠고기 9.6%, 돼지고기 19.6%, 닭고기 8.3%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관세율 하락에 따른 효과>

(단위 : 원/kg)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16년 기준 미국산 수입가	FTA 미발효시 추정(A)	10,219	3,676	1,429
	FTA 발효된 현재가격(B)	9,241	2,955	1,310
관세율 하락효과 (B/A)		**△9.6%**	**△19.6%**	**△8.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각 축종별로 미국산 수입품목 중 상위 3개를 토대로 산출(관세율, 환율적용)

□ 시장개방으로 인한 축산농가 사육의욕 저하 및 경쟁력 하락

❍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농축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나, 그 중 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함.

- 농업생산액의 42.5%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관세인하로 피해 지속

❍ FTA 이후 한우농가 폐업 증가로 한우 생산기반 약화

- 한우농가 : ('12)142천호 → ('16)85 ⇒ 57천호(40.1%) 감소

❍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와의 가격격차 확대

- '12~'16년 미국산 수입가격 16.5% 상승 대비, 한우 도매가격은 41.4% 상승

<한우 도매가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구 분	2012년	2016년	**12~16년 증감**
한우 평균 도매가격 (원/kg)	12,814	18,116	**41.4%**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원/kg)	7,934	9,241	**16.5%**

주) 미국산 수입가격은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 산출

2. 한·미 FTA 재협상을 식량주권 사수의 기회로 삼아야

□ (쇠고기) 세이프가드(ASG) 발동기준 하향조정

❍ 우리나라의 쇠고기 ASG는 29.4만톤('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인 58만톤('16 추정치)의 절반 이상

- 2016년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 153천톤

❍ 한미 FTA협상에 따라 쇠고기는 2026년, 냉장돼지고기는 2021년 관세가 0%가 됨으로써, 미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강력해짐

<축산물 수입관세율 ZERO화 시점표>

(단위 :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쇠 고 기	40.0	37.3	34.6	32.0	29.3	26.6	24.0	21.3	18.6	16.0	13.0	10.6	8.0	5.3	2.6	0.0
돼지고기 (냉장)	22.5	20.2	18.0	15.7	13.5	11.2	9.0	6.7	4.5	2.2	0.0					

주) 돼지고기(냉동) : 2014년(삼겹살), 2016년(삼겹살 외 기타) 이후 관세 0%.

❍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조건과 비교해보아도, 한미 FTA의 ASG는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됨.

<주요 FTA 국가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품 목	초기 발동기준(톤)				연간 증량				적용 기간			
	한미	한·EU	한호	한캐	한미	한·EU	한호	한캐	한미	한·EU	한호	한캐
쇠고기	270,000	9,900	154,584	17,769	6,000	복리 2%	복리 2%	복리 3%	15년	16년	16년	16년

❍ 현재 ASG 발동기준은 사실상 수입물량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교란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음

❍ 따라서 쇠고기 ASG를 한·호주 협상 수준으로 낮추어 FTA 체결국가 간 공정한 시장구도를 유지하고 국내 한우산업 안정을 도모

<연도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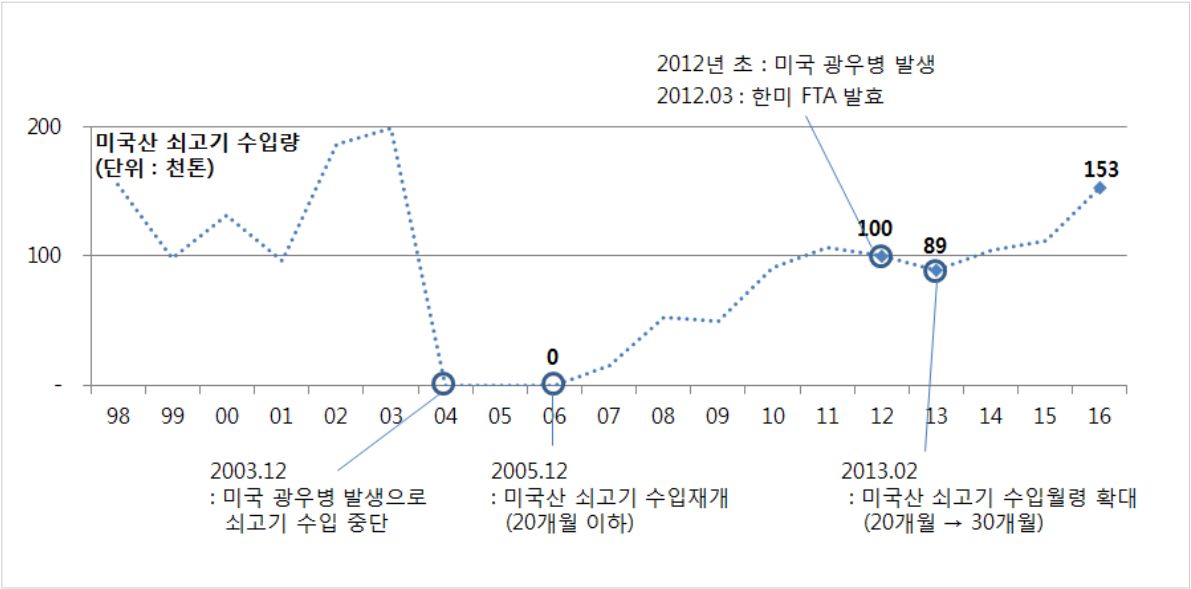

□ (유제품) 국내산 유제품 자급률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 확대

❍ 축산강대국과의 FTA 확대로 인해 국내 낙농업은 연평균 370억원 내지 1,170억원 피해가 예상됨 (전상곤 경상대 교수연구팀 발표자료)

- 직접피해액 : 42억원 (농가수취가격 하락)
- 분유재고 증가액 : 338~1,128억원

※ 우리나라는 미국의 4위 수출시장 (캐나다 > 멕시코 > 사우디 > 한국)

❍ 따라서, 국내산 유제품 자급률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유제품 생산시 일정비율 이상 국내산 원료사용을 하도록 조치.

[사례] 일본-호주 FTA

❍ 협상대상에서 분유·버터 등 주요 유제품 제외

❍ 소비량이 많은 치즈는 자국산과 호주산을 1대3.5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제시

❍ 관세는 철폐가 아니라 일정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

※ 일본의 경우, 우유급식을 학교급식과 묶어 시유 소비량을 유지

- 일본 우유급식 비율 : 95% (우리나라 51.1%)

3. 지속경영이 가능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 구축

□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국민의 신뢰회복 필요

❍ 수입산 축산물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도 적절한 방어책이 없음.

❍ 축산농가 고령화는 계속 심해지는 반면, 신규 축산종사자는 찾기 어려움.

※ 65세 이상 축주 44.3% (농업 37.3%, 국내 12.3%) - 2014.7 농경연

❍ 먹거리 위생·안전문제, 축산악취 문제 등 환경오염 요인으로 각종 축산정책을 고안해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움.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제외 등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농축수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부족에서 기인

❍ 따라서, 축산농가, 축산업계가 수입 축산물 및 제도변화 등 외부위협에 강한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축산업 개선 지원이 절실함.

Memo

Memo

Memo

한·미FTA 재논의
농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
국회정책토론회